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 사례 26 2021광주조정13·14/15·16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100만 원)

지자체가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신청인들이 업체와 결탁해 특정 처리방식 도입을 고집하는 등 시의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시가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A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일부 기자들, B 업체, 그리고 주부 두 명이 특정 처리방식의 소각로를 고집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A시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 ■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A시에 거주 중인 주부들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A시가 건립하려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사업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해 왔고, 특히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처리방식(스토커 방식)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어 친환경적 소각로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들이 B 업체의 사주를 받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사 중 ‘주부 두 명’이 신청인들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신청인들은 A시 소각로 추진에 관련된 시민단체는 신청인들이 소속된 단체뿐이므로 보도에 언급된 ‘주부 두 명’은 자신들이라는 점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일반 독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청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권유했고,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시 쓰레기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과 관련해 특정 처리방식 도입을 고집하며 A시의회 일부 의원과 일부 지역 주재기자과 인터넷 기자 3 ~ 4명, B 업체 관계자, 주부 두 명이 반대, 시 현안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를 들먹이며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시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환경부의 새로운 지침에 대한 홍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사실] A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 홍보 시급>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 쓰레기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과 관련해 특정 처리방식 도입을 고집하며 A시의회 일부 의원과 일부 지역 주재기자과 인터넷 기자 3 ~ 4명, B 업체 관계자, 주부 두 명이 반대, 시 현안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 기사에 언급 된 주부 두 명은 특정 처리방식 도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친환경적 소각로 설치를 주장한 것이며, B 업체 관계자라도 무관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신문 11면 오피니언란에 정정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크기로, 본문은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오피니언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나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정정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위의 이행과 함께 정정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상자기사로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50만 원씩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사례 27** 2021경남조정10·1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단체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30만 원)

주민자치회 위원 선임이 상인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자치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고, 이로 인해 회장 등 임원 선거도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21명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상인회와 관련 있으며, 평균 연령이 70 ~ 80세에 이르러 온라인 교육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예비군 중대장까지 위원으로 편입시키는 등 ○○동 행복복지센터가 편법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심이 있고, 기표소도 없이 공개투표를 진행하는 등 주민자치회장 경선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 등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주민자치회 임원 9명 중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해 상인회와 관련된 사람이 인원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보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회 위원 평균 연령은 60세 정도이며, 자치회 위원인 예비군 중대장은 8년간 ○○동에 거주하여 주민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치회에 자의로 참여한 것이지 행복복지센터가 개입한 바 없고, 회장 경선은 투표함을 설치하여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등 투명하게 치러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언론사가 낙선자들의 허위제보를 일방적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2,45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제보를 받아 보도한 것이더라도 사실 확인 절차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소액이라도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해 협의해볼 것을 권유했고, 양 측이 이를 수용하여 정정보도 및 3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그런데 또 다시 지난 5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동 통장이 올해 새로 선임된 사람이 3명이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상인회 관련된 자들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출신이다”라고 제보하면서 “○○동 주민자치회를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할 때 현 임원진들이 임원선출 과정에서 이미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들을 몇 명이 내정해 놓았다”며 “□□동 상인회 소속 노점상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21명을 주민자치회 임원이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70 ~ 80세가 넘는 사람들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줄도 모른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상인회 관련자들이 21명 임원이 됐고, 심지어는 예비군 중대장까지 집어넣었다”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로지 표만 모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자치회 회장 경선을 하는데 비밀 투표도 보장되지도 않고 기표소 없이 동직원이 서서 1, 2번 표기로 선출했다”며 “결국 상인회 관련자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는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주민자치회 명단을 등에 요구하자 목살 시켰다”며 “경선해봐야 상인회 임원들이 43%가 되니 경선이 되냐”고 반문하면서 “불공정 사례가 있다. 감사를 요구해 ○○동 주민자치회를 해산시키고 새로 구성해야한다며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A시 ◇◇구 ○○동 주민자치회 관련

**본문내용:** 본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올해 ○○동 통장으로 3명이 새로 선임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상인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으나 새로 선임된 통장은 4명으로, 이중 상인회에 소속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동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49명 중 임원은 총 9명이고, 전체 위원 중 상인회 소속은 총 15명이므로, ‘상인회 관련자들 21명이 주민자치회 임원이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교육 이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A시 관련 조례 및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이수증 제출 후 위원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넷째, 주민자치회 회장 경선 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등 경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문제가 없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최상단 주요기사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 사례 28 2021서울조정1129·119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 손해배상 1,500만 원)

언론사가 법원의 결정을 잘못 이해한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게재한 사안과 관련, 중재부가 직권으로 다시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과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인용하여 ‘4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7년간 성폭행하고 협박해오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가 잘못되었으므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신청인 언론사는 ‘자살한 40대 남성이 7년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청원 글 내용은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 ■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가해자 유족이 주장한 취지를 재판부의 결정으로 잘못 이해해 재판부가 마치 신청인이 해당 남성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비난이 크게 이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최초 정정보도가 잘못된 내용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했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액수는 중재부의 결정을 바란다고 진술함에 따라 중재부는 정정보도 게재 및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측 모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 조정대상보도

[전략] 본 매체는 해당 기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XX. △. △. 게시된 “저를 7년이나 성폭행하고 살인미수, 협박, 폭행, 강간해온 가해자를 고발하며, 더하여 부실수사와 정보 유출하는 경찰수사관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와대 청원에

등장하는 가해자가 ◇◇ ○○의 주거지역에서 20XX년 △월 △일 자살한 40대 남성”이라는 내용, “해당 가해자가 20XX년부터 7년간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 ○○의 주거지역에서 20XX년 △월 △일 자살한 40대 남성은 7년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본 매체가 인용한 청와대 청원 글의 내용은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당 남성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매체가 보도했던 기사의 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정정보도] “[단독] 7년간 성폭행 등으로 망가진 삶 … 피의자는 극단적 선택”>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 ○○의 주거지역에서 20XX. △. △. 자살한 40대 남성은 7년간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본 매체가 인용한 청와대 청원 글은 (중략) 해당 남성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성폭행 관련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없고, 여성의 청와대 청원글이 남성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해당 보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사회섹션 기사목록(상단 5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례 29 2021서울조정1364/1365 각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400만 원)

양육비 청구 소송 관련 보도를 하면서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들의 과거 영상자료를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현행 민법 규정상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어 조손가정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후견인으로 외손자를 맡아 양육하고 있는 70대 A 씨의 사연을 뉴스 프로그램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A 씨의 딸이 이혼 소송 중 사망하자 이를 알게 된 A 씨의 사위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A 씨는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의 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향후 배우자가 아닌 후견인도 양육비를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신청이유

조손관계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해당 보도를 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 관련 화면을 사용하여 초상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영상은 4 ~ 5년 전 태양광시설 설치 시 방송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촬영 협조를 구해와 허락한 것으로, 당시 방 안까지 촬영한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동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해당 방송이 자료화면을 흐리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가족들과 친인척은 영상 속 인물이 모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고, 특히 딸이 이혼 소송 중에 사망했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영상을 사용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으로 피해도 크다며 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미 수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흐림 처리를 하였더라도 보도된 소송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들의 초상을 불명예스러운 보도에 사용한 점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4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5년째 외손자를 맡아 기르고 있는 70대 A 씨.

이혼 소송을 하던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엄마 잃은 외손자의 후견인을 맡았습니다. 그러자 월 양육비 70만 원씩을 보내오던 아이의 친아버지, 즉 A 씨의 사위는 양육비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A 씨는 사위를 상대로 매달 양육비 2백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후견인임에도, 외할아버지의 신분으로 양육비를 받아 낼 길이 막막했습니다. 매달 들어갈 미래의 양육비는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만 민법에 규정돼 있어, 다른 사람은 요구할 자격조차 안 됩니다. **[중략]**

그런데 대법원이 배우자가 아닌 양육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양육책임에 대한 민법 조항을 폭넓게 적용하면, 미성년자를 책임지는 후견인도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위가 A 씨에게 매달 1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4,000,000원(신청인별 2,000,000원씩)을 지급한다.



**사례 30** 2021서울조정1400·140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700만 원)

함께 여행 중이던 여성을 고문 및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된 남성 관련 보도에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터키에서 한 한국 남성이 함께 여행을 간 한국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지 검찰로부터 징역 46년을 구형받았다고 보도하면서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터키 현지 언론이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기사와 함께 게재했고, 피신청인 언론사는 해당 보도를 전재하면서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이스탄불에서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한국 남성이 자신인 것처럼 오인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사안의 특성상 정정보도보다는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청인은 심리 중 정정보도청구는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 후 2시간 내로 사진을 삭제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금 7,000,000원 정을 지급한다.



### 사례 31 2021서울조정1533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유튜브채널)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100만 원, 열람차단)

신청인이 특정 연예인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신상정보를 노출하여, 언론사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기사의 열람을 차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A 씨가 가수 B를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팬 카페에 올려 B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연예인 C로부터 고발당했고, 수사결과 A 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또한 A 씨는 가수 B의 전 매니저 K의 누나로, B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협박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 ■ 신청이유

신청인 A 씨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이뤄졌으나, 아직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 이름 두 글자와 운영하는 농장 이름이 공개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 심리 이전에 조정대상보도 전체를 열람차단했으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재부는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 조정성립사항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2** 2021경남조정24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100만 원)

사고 후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망자의 사진을 게재한 보도와 관련, 공익 목적의 보도일지라도 초상 공개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A 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구조 당시 해경이 A 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추락사고 후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보도 사진 속 망자 A 씨의 자녀들로, 사진을 보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이 담긴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동의 없는 초상 공개에 대해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경찰이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없고, 조정이 신청된 후 즉시 사진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며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해당 보도에 반드시 망자의 사진을 게재해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나 주변 사람들은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었고, 같은 사안을 보도한 대부분의 타 언론사들이 추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진의 게재로 망자의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과 이로 인해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인정된다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 ■ 조정대상보도

지난 △일 오후 10시 27분쯤 경남 ○○시 □□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A 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A 씨가 추락하는 것을 일행이 목격, 119와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구조거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17분 만에 현장에 도착, 테트라포드 사이에 갇힌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10분 만에 A 씨를 구조했지만 의식·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육상에서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후략]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도합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3** 2021경기조정230·231·232/233·234·23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학교 밖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서,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하고 취지를 왜곡되게 편집해 방송한 사안에 대해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꿈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가 설립되었으나, 학습 공간과 강사 인건비 부족, 부실한 프로그램 진행 등 운영상 문제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학교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방송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에 인터뷰 당사자 B 씨로 언급된 ○○학교 운영자로, 인터뷰가 아닌 간단한 사전조사를 전제로 기자의 문의에 답변하였는데, 통화내용이 녹음되는 사실을 몰랐으며, 뉴스에 음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동의 없이 녹취한 통화내용을 정식 인터뷰인 것처럼 편집하면서, 수년 전 학습공간이 부족했던 일을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묘사하고, 강사로 책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왜곡하는 등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신청인 답변을 의도와 다르게 방송하여, ○○학교 운영에 불만에 품은 내부고발자로 오해받게 됐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신청인은 방송과 인터넷상에서 각각 정정보도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인터넷 기사 형식의 정정보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재부는 정정보도를 인터넷에만 게재하되 음성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권유했고, 이에 양 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사항

###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립니다] ◇◇ ○○학교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 관련, 당시 보도 내용 중 해당 인터뷰 당사자(□□ A 씨, △△ B 씨)의 입장 및 취지가 다름을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운영자 등은 “7년 동안 이어온 ○○학교가 배움의 주체인 학생 중심으로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천함은 물론 미래교육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림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12시간 동안은 뉴스면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알림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알림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의의 사항을 전송한다.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500,000원을 지급한다.

**사례 34** 2021서울조정1754·1755·1756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언론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30만 원)

여권 정치인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신청인이라고 잘못 보도한 사안에 대해 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사전 게재한 후, 심리 과정에서는 소액의 손해배상금을 상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튜브 채널 ○○○○TV가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여당 정치인 B 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TV의 운영자는 여권 성향 매체에서 활동한 A 씨라고 언급했다.

**■ 신청이유**

A 씨로 언급된 신청인은 ○○○○TV를 운영하기는커녕 해당 매체에 출연한 적도 없으면서, 첫 오보를 게재한 C 인터넷신문의 기사를 다른 매체들이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받아쓰면서 오보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수차례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 언론사는 여전히 보도를 수정하지 않고 있어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오보를 인정하고 조정 신청을 받은 후 기사 수정 및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중재부는 정정 및 반론보도가 반영된 상황이므로, 손해배상은 상징적 의미를 표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했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언급 부분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신청인 계좌로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5** 2021서울조정2521·2522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손해배상 300만 원)

특정 SNS 계정의 여학생 교복 성적 대상화 논란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 게재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두고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사진 여러 장을 기사 본문에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1만 명 이상이 팔로우 하고 있는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해당 보도를 하면서 자신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를 알아 본 사람들로부터 신청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그대로 합의하기를 권고했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에 동의하여 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 A 씨는 “본인들 허락 받고 올린다지만 너무 충격 받았다”며 “미성년자들의 노출 심한 교복 사진들만 모아서 업로드 하더라. 학생들 교복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하는 게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언급한 SNS 계정에는 10대 여학생들의 교복 차림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계정의 팔로워 수는 2만 5000여명이 넘는다. **[중략]** 해당 계정 속 여학생들은 교복 차림으로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가슴을

내밀거나 다리를 부각하는 등 몸매를 드러내며 허리에 딱 붙은 상의, 짧게 줄인 치마 등을 입었다. 사진의 배경은 주로 학교 교실이나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이었다. [후략]

※ 신청인 사진은 열람이 차단되었음

## ■ 조정성립사항

###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3,000,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6** 2021대전조정48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손해배상 50만 원)

지역 공연 정보를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촬영한 공연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새로 건립된 지역 공연장이 공식 개관을 앞두고 사전공연을 선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공연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공연 후기 및 공연 사진을 주로 올리는 블로거인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심리가 열리기 전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 조정대상보도**

○○시문화재단(대표이사 A)은 X일 내년 △월에 공식 개관을 앞두고 ○○예술의 전당 첫 번째 사전공연으로 'B와 함께하는 특별 ◇◇◇콘서트'를 선보였다. **[후략]**

※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은 열람이 차단되었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